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57호

2020. 12. 03.

건명	논산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과)		
제안 및 제출자	논 산 시 장	제안연월일	2020. 11. 16.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부연월일	2020. 11. 16.

보 고 내 용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이·통장 자녀장학금 제도운영의 공정성 제고’ 방안 권고

⇒ 권고과제 : 투명하고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 기준 마련

□ 주요내용

- 자녀 장학금 자격 대상을 “논산시장으로부터 효행상을 수상한 자” 에서 “기관장 등으로부터 수상을 받은 자” 까지 확대 지급함으로써 이·통장의 사기진작 제고(안 제2조제4호)
- 심사항목, 항목별 비중, 구간별 차등화된 배점 등 장학생 선발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선발기준 마련(안 제4조제1항)

□ 검토의견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투명하고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158호
----------	-------

2020. 12. 03.

건명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관리현황 보고 (행정지원과)		
제안 및 제출자	논 산 시 장	제안연월일	2020. 11. 16.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부연월일	2020. 11. 16.

보 고 내 용

□ 제안이유

-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 등 사후 관리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함.

□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현황

체결일	대상기관 (단체)	체결명	주요내용	비고 (추진부서팀명)
2020.1.1.	관내 사업시행 의료기관 2개소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표준 협약서	무료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대상자, 운영규모, 지원기간, 지원내용 등에 대한 업무 협약	보건위생과 의약팀
2020.1.16	경희한의원 등 3개소	논산시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위한 업 무협약	한방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 참여	건강도시 지원과 모자보건팀
2020.1.31	황산의원 등 21개 병의원	고혈압·당뇨·합병증 조기 발견사업 업무 협약	고혈압·당뇨 환자대상으로 한 고혈압·당뇨·합병증 검진을 의료기관에 위탁	건강도시 지원과 방문간호팀
2020. 3.3.	모아산부인과 등 4개소	논산 예비아빠 검진 협약	출산 장려를 위한 논산 예비 아빠 검진 사업 운영 협조 및 홍보	건강도시 지원과 모자보건팀

2020.3.16.	육군항공학교	육군항공학교 시설 사용-운영 지원 협약	-市: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력지원(인건비) -軍: 목욕탕 개방 및 운영 (소모품비용 부담)	국방협력과 민군협력팀
2020.4.29.	주식회사 하나은행	논산시 선불카드 발행 서비스 제휴 협약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선불카드 발행	행정지원과 행정팀
2020.10.15.	충청남도 육군군수사령부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논산 국방 국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협약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국방 국가산업단지 조성 협력	국방협력과 국방산업단지 원팀

□ 검토의견

-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 등 사후 관리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59호

2020. 12. 3.

건명	202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계과)		
제안 및 제출자	논 산 시 장	제안연월일	2020. 11. 16.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부연월일	2020. 11. 16.

보 고 내 용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결을 언고자 함.

주요내용

-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3건으로 아래와 같음.

연번	사업명	소관부서	비고
1	성동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마을자치분권과	
2	연산 다목적회관 조성사업	마을자치분권과	
3	스마트농업 복합단지 조성사업	기술지원과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73호

2020. 12. 3.

건명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지원과)		
제안 및 제출자	논 산 시 장	제안연월일	2020. 11. 16.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부연월일	2020. 11. 16.

보 고 내 용

□ 제안이유

- 행정서비스 증진을 위한 기구의 증설, 존속기한이 도래한 한시기구의 폐지 등 일부 기구와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의 폐지(안 제3조, 안 제6조)

- 미래발전사업단(존속기한 : 2020. 12. 31까지) 폐지

나. 관련법에 규정한 과단위 행정기구 요건에 부적합한 기구의 폐지(안 제7조의2)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폐지 → 자문기구로 전환

다.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증진을 위한 기구 분리 및 신설(안 제4조, 제5조)

- 민원과 신설 : 민원토지과 → 민원과(친절행정국), 토지정보과(행복도시국)

라. 부서 명칭변경 및 이관 등 변경 (안 제4조, 안 제4조의2, 안 제5조, 안 제6조)

- 전략기획실 ⇒ 전략사업실
- 행정지원과 ⇒ 자치행정과
- 정보통신과 ⇒ 디지털뉴딜과
- 사회적경제과 ⇒ 뉴딜경제과
- 희망마을건설과 ⇒ 건설과
- 동고동락국 관광체육과 ⇒ 친절행정국 관광체육과
- 미래발전사업단 미래사업과 ⇒ 친절행정국 미래사업과
- 미래발전사업단 국방협력과 ⇒ 친절행정국 국방협력과
- 행복도시국 농업정책과 ⇒ 동고동락국 농업정책과

- 행복도시국 축산자원과 ⇒ 동고동락국 축수산과
 - 친절행정국 환경과 ⇒ 동고동락국 환경과
- 마. 2021년도 기준인력 증원에 따른 직급·직렬별 정원조정(안 제20조, 안 별표 6)
- 정원의 총수 : 1,089명 → 1,104명(증 15명)
 - ▶ 4급 : 6명 → 5명(△ 1명)
 - ▶ 5급 : 60명 → 58명(△ 2명)
 - ▶ 6급이하 : 973명 → 991명(증 18명)
- 바 국·단·과 단위 조정(요약)

현 행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청 : 3국 1단 / 5(실·기획단) / 27과 ○ 의회 : 1국 ○ 소속기관 : 2직속기관, 2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속기관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 사업소 : 공공시설사업소, 서울사업소 ○ 하부행정기관 : 2읍 11면 2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청 : 3국 / 4(실) / 28과 ※ 한시기구종료 및 조직개편 ○ 의회 : 1국 ○ 소속기관 : 2직속기관, 2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속기관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 사업소 : 공공시설사업소, 서울사업소 ○ 하부행정기관 : 2읍 11면 2동

구 분	부 서	비 고
폐 지	미래발전사업단	△1
	도시계획상임기획단(부시장 직속)	△1
신 설	민원과(친절행정국)	+1
명칭변경	전략기획실 ⇨ 전략사업실 행정지원과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 디지털뉴딜과 축산자원과 ⇨ 축수산과(동고동락국) 사회적경제과 ⇨ 뉴딜경제과 희망마을건설과 ⇨ 건설과 민원토지과 ⇨ 토지정보과 (행복도시국)	
과 이동	관광체육과 (동고동락국 ⇨ 친절행정국) 미래사업과 (미래발전사업단 ⇨ 친절행정국) 국방협력과 (미래발전사업단 ⇨ 친절행정국) 농업정책과 (행복도시국 ⇨ 동고동락국) 환경과 (친절행정국 ⇨ 동고동락국)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개정조례안 공포 후 추경에 반영 예정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3) 규제심사 : 대상아님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10. 30. ~ 2020. 11. 18.(20일간)

나) 예고결과 : 붙임

5) 비용추계서 : 붙임

6) 충청남도 소관실과 :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041-635-2332)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등의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